



소 방 청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구급장비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관보게재 의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구급장비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위하여 관보게재를 다음과 같이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법령명	공고번호	관보게재일 (예정일)	예고기간
구급장비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소방청공고 제2018-115호	2018.8.23.	8.23.~9.12. (20일간)

- 붙임 1. 「구급장비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공고목록.
 2. 「구급장비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문.
 3. 「구급장비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끝.

소 방 청



소방위 박홍수 구급정책계장 휴가 119구급과장 전결 2018.8.17. 강대훈

협조자

시행 119구급과-4991 (2018. 8. 17.) 접수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119구급과(248호) / www.nfa.go.kr
(나성동)

전화번호 044-205-7633 팩스번호 044-205-8934 / fire4242@korea.kr / 대국민 공개